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(대표)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56 |
|----------|-----|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발 의 자 : 이정인 의원 (1명)
찬 성 자 : 김경우, 이영실, 전석기,
오현정, 이병도, 문장길,
노승재, 이태성, 김 경,
홍성룡, 박순규, 한기영,
김화숙, 문병훈, 송아량,
이은주, 채유미 의원 (17명)

1. 제안이유

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도록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

2. 주요골자

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(안 제4조의3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렴)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 style="margin: 0;"><u><신 설></u></p> | <p style="margin: 0;"><u>제4조의3(보조기기 이용자의 의견수 렴) 시장은 보조기기의 구매, 대여 및 제작 등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 공함에 있어 이용자의 의견을 반 영하여야 한다.</u></p> |